

2006. 4. 26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
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

검 토 보 고 서

<제148회 임시회>

군의회 전문위원 장윤석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
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21일
- 제출자 : 성증도 의원외 2인
- 검토일자 : 2006년 4월 24일

2. 개정이유

-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토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(2006. 2. 8. 대통령령 제19322호)
- 따라서 달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금액과 근거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것임

3. 검토의견

○ 주요내용은

- 월정수당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(안 제3조)

<월정수당 지급기준> - 안 제3조 별표2

월정수당
1,612,000원

-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
-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 부터 소급 적용
-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, 식비 등을 의장·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던 것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 시킴.

○ 검토결과

-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적법절차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의 범위 내에서의 개정된 조례안임

-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, 식비 등을 의장·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것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 시킨 것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안임

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21일
- 제출자 : 성증도 의원외 2인
- 검토일자 : 2006년 4월 24일

2. 개정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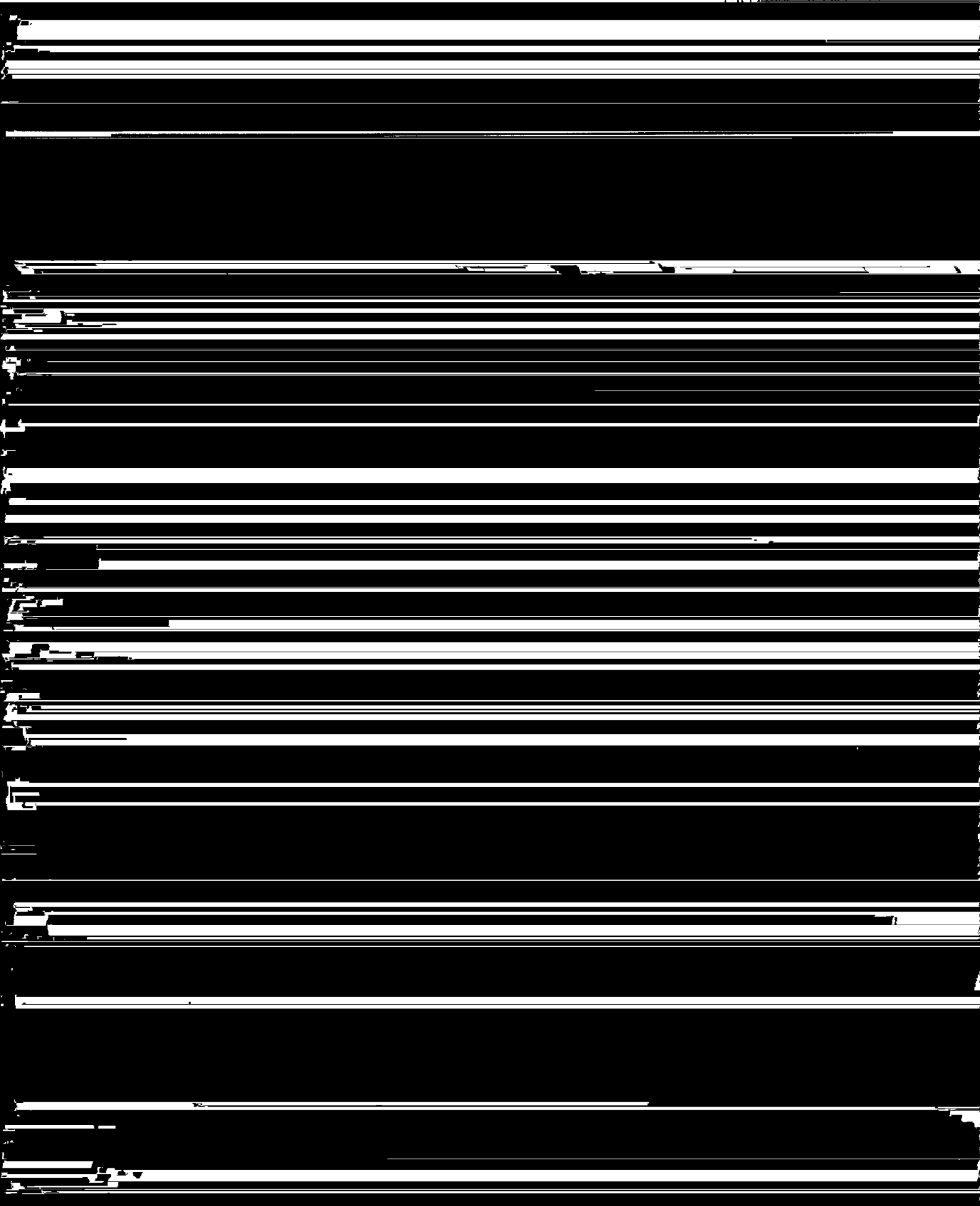
-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(2006. 2. 8. 대통령령 제 19322호)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급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임

3. 검토의견

○ 주요내용은

- 지방의회 의원의 사망·장애 보상금의 지급기준 변경
⇒ 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
“회기수당”에서 “의정활동비”로 변경

- 보상금 지급기준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
범위내에 이기 적용시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



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21일
- 제출자 : 달성군수 (세무과장)
- 검토일자 : 2006년 4월 24일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법」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성군세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임

3. 검토의견

○ 주요내용은

-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공개대상 심의 및 명단공개 요청 (안 제9조의1)
-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가 가능토록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 부여 (안 제22조)

-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경우 매년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는 고지방방 개선 (안 제28조, 제90조)
- 공매신청 절차에서 매수대금 납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신설 규정 및 영업용과, 비영업용 간의 전환시 자동차세 세액산출 및 부과방법 명시 (안 제37조, 제39조, 제40조)
- 제2종 파이프담배 등의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(안 제56)
-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2009년도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액을 적용하고 2011년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액에 화물자동차의 세액과 승용자동차의 세액의 33%(2010년), 66%(2011년)를 가산하여 과세 (부칙 안 제3조)

○ 검토결과

- 법령에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
- 따라서 군수도 조례로 정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나 지방세는 시세와 군세를 합산하여 1억원 이상

고액·상습채납자로 대구광역시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도 이와 같음.

-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됨.

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21일
- 제출자 : 달성군수 (세무과장)
- 검토일자 : 2006년 4월 24일

2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, 자동차관리법,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성군세 감면조례를 정비·보완코자 함

3. 검토의견

○ 주요내용은

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화물자동차를 추가 (안 제2조, 제3조)
-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

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,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사업
소세 면제 (안 제5조의1)

-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시행령에 신설 규정함에 따른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관련조항 삭제 (제13조)
-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005. 12. 31까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,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한을 삭제 (안 제19조)

○ 검토결과

-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관련조례에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21일
- 제출자 : 달성군수 (회계과장)
- 검토일자 : 2006년 4월 24일

2. 개정이유

-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 (법률 제7665호, 2005. 8. 4 공포, 2006. 1. 1 시행)
- 우리군의 물품의 사용, 관리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필요사항을 정비·보완코자하는 것임.

3. 검토의견

○ 주요내용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 관리운영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2조)

- **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·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함**
(안 제3조)
- **기증품 취득시 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**
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
방지하도록 규정 (안 제11조)
- **물품의 망실·훼손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규정(안 제22조)**
- **현행 조례 제22조 제3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물품출납**
사무의 사고에 관한 사항을 중복 규정한 제30조 삭제
- **<별표1>의 품종구분 기준 중 비품으로 정한 “내용**
년수 1년 미만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”
을 삭제하고, 소모품으로 “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
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”을 10만원 이하의
물품으로 상향 조정함

○ 검토결과

- 개정된 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”의 내용을 관련
조례를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
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
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21일
- 제출자 : 달성군수 (회계과장)
- 검토일자 : 2006년 4월 24일

2. 제정이유

- 국가계약법이 지방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필요성
으로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
법률” 등의 지방계약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
- 동 법률에서 규정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
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상한 금액과 주민참여감독자의
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

3. 검토의견

○ 주요내용은

- 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, 임무·임기, 기능 등 규정
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11조, 제13조)

·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 (안 제12조)

⇒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5억원 미만의 일반공사,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, 건물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다음 각호의 공사 (별첨 조례안 참조)

○ 검토결과

-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결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(품질시험계획 수립 시행) 규정에 따라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상한액을 정함.
-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은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을 적용 (행정자치부 준칙안 배제)

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21일
- 제출자 : 달성군수 (회계과장)
- 검토일자 : 2006년 4월 24일

2. 개정이유

-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” 이 분리 제정(법률 제7665호, 2005. 8. 4공포, 2006. 1. 1시행) 시행됨.
-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함

3. 검토의견

○ 주요내용은

-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 상향 조정 (안 제5조 제2항)
⇒ 대상재산의 대장가격을 2천만원 (종전 1천만원)
- 행정·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항 신설 (안 제22)

- 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조항 신설 (안 제29)
-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시 공용면적비율 30% 일률적 적용 (안 제31)
-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을 하향 조정 (안 제34조)
 - ⇒ 지목상 전·답을 경작용으로 사용·대부하는 경우 : 100분의 50
 - ⇒ 생산·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·대부하는 경우 : 100분의 45
 - ⇒ 기타의 경우 : 100분의 40
-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세부조항 신설 (안 제38조)
 - ⇒ 50만원 초과 : 3월이내 2회 분납
 - ⇒ 100만원 초과 : 6개월이내 3회 분납
 - ⇒ 200만원 초과 : 9개월이내 4회 분납
-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근거 미비로 삭제된 관련 조례 삭제 (현 조례 제41조, 제2항~6항)

- **현 조례 제3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의계약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조항 신설 (안 제40조 제1항)**

⇒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,000제곱미터 이하로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(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% 이상이어야함)

- **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 납부 조항 신설 (안 제63조)**

⇒ 50만원 초과 : 6월이내 2회 분납

⇒ 100만원 초과 : 1년이내 4회 분납

⇒ 200만원 초과 : 2년이내 8회 분납

⇒ 300만원 초과 : 3년이내 12회 분납

○ 검토결과

- 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” 에서 규정한 개정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조례안 준칙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·보완한 것임.

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21일
- 제출자 : 달성군수 (세무과장)
- 검토일자 : 2006년 4월 24일

2. 개정이유

- 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”
개정으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
자에 대한 수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
규정

3. 검토의견

○ 주요내용은

- 부동산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
신청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매1건당 1,000원을 정함

○ 검토결과

- 지방재정법 제128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과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수수료 결정

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
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21일
- 제출자 : 달성군수 (복지위생과장)
- 검토일자 : 2006년 4월 24일

2. 개정이유

- 긴급복지지원법 제정(법률 제7739호, 2005.12.23. 공포)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 관련 조항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코자 하는 것임.

3. 검토의견

○ 주요내용은

-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·건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추가 (안 제2조)

○ 검토결과

-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,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·건의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음.

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칠 것입니다.

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06년 4월 20일
- 제출자 : 달성군수 (경제투자지원과장, 공원녹지과장)
- 검토일자 : 2006년 4월 21일

2. 주요골자

- 토지매각
 - 가창 냉천 전원음식점지구 상업용지 토지 매각
 - 위치 : 가창면 냉천리 2-15 ~ 30번지 (2-22번지 제외)
 - 면적 : 15필지 25,241m²(7,630평)
 - 재산가액 : 8,077,120천원 정도 (공시지가)
 -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상업용지 토지 매각
 - 위치 : 옥포면 반송리 359-5 ~ 17번지
 - 면적 : 13필지, 6,818m² (2,061평)
 - 재산가액 : 1,445,416천원 정도 (공시지가)

○ 토지매입

- **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지구내 사유림 매입**
 - 위치 : 화원읍 본리리 산126번지 일원
 - 면적 : 4필지, 1,596,397㎡(438,700평)
 - 지목 : 임야
 - 재산가액 : 406,748천원 정도 (평당 920원-공시지가)

3. 검토의견

○ 본 계획(안) 중

-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토지 매각 건은 냉천유원지내에 난립한 식당정비와 아울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양코자하는 것이며
-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토지 매각 건은 군립공원내 난립한 식당정비와 아울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조성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양코자하는 것임.
-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지구내 사유림 매입 건은 화원휴양림 시설지구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휴양림의 부대시설(등산로 등)을 설치코자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가창 냉천유원지 전원음식점지구 토지 매각 건은 상업용지 (식당)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이며, 분양 필지당 면적이 500평 정도로 면적이 큰 관계로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됨 - 질의사항
- 옥포 용연사 집단시설지구 토지 매각 건은 상업용지 (식당)를 12필지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주대상자 및 용연사에 분양하며, 1필지는 공개입찰 방법으로 분양, 건축행위시에 높이가 2층으로 제한되고 있어 3층으로 건축가능 하도록 공원계획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- 질의사항
- 화원 자연휴양림 시설지구내 사유림 매입 건은 화원 휴양림 시설지구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